##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7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한민수 • 박 정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「행정기본법」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

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1조의3). 법률 제 호

###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제6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"을 "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.
-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3(부담금의 징수 및 이	제11조의3(부담금의 징수 및 이
의신청) ① ~ ⑤ (생 략)	의신청) ① ~ ⑤ (현행과 같
	흥)
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	6
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	
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	
경우에는 <u>기획재정부장관에게</u>	<u>부담금</u> 납부고지를
<u>이의를 신청할</u> 수 있다.	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
	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
	<u>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
	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
	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
	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
	게 통지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
	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
	<u>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</u>
	<u> 따른다.</u>
<u>⑦</u>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